#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56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황정아·조인철·서영교

김성환 • 이기헌 • 박정현

장철민 • 박용갑 • 노종면

김남근 · 이인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중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이하 "국가연구데 이터"라 함)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 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 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 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연구개발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 사.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재산적 가치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제18조 및 제20조).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확산을 촉진하여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 3.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 4. "국가연구데이터"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5. "국가연구데이터처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성·가공·결합 등과 관련된 일련의 처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연구데이터가 공공의 연구자산으로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생성·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 터가 소속 연구자 상호 간에 원활하게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체 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연구데이터를 처리한 연구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국가연구데이터가 원활하게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권리의 보호 등)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를 국가연구데이터처리자 로 표시하는 등 국가연구데이터처리자의 성과를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연구데이터처리자는 자신이 처리한 국가연구데이터의 사용 •수익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④ 연구개발기관 등으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국가연구데이터 를 취득하여 활용하는 자는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의 출처와 이용내역을 이용조건에 따라 표시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 제2장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의 추진체계

- 제6조(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성,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3.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 확산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5. 국가연구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6.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국가연구데이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9조(국가연구데이터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센터"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2. 국가연구데이터 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및 제공
  - 3.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자동화시스템의 설계·개발·구축 및 관리
  - 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표준화 기술 등의 개발 지원
  - 5.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교육 지원
  - 6. 국내외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 7.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 ④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가연구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 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 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 제12조(국가연구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게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취득·생성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이라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국 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연구데 이터관리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생성 · 보존 및 관리하

- 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보유·관 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지정되는 등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기간 동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호환성 및 활용성 제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간협력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
  - 2.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공동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위한 조사· 연구·개발 등 표준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기관 및 국가연구데이터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 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와 협력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 가연구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 을 마련할 수 있다.
  - 1. 국가연구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 2. 국가연구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 3. 국가연구데이터 품질 인증
  - 4.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 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제11조제

- 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장은 생성·수집한 국가연구데이터가 유출되지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실태 점검 및 조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촉진

- 제17조(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 원칙)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를 워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용이하게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관리 기관을 파악할 수 있고,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용 목적에 따라 상호 운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

- 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국가연구데이터처리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해당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국가연구데이터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인식개선 및 제도정비)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재산적 가치 및 권리 보 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가연구데이 터가 효율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 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제21조(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국제협력 촉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인력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3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 2.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업무
- 3.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데이터의 생성·활용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 터위원회 위원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